

2026년 안산시 상록수보건소장(개방형직위)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2026년 안산시 상록수보건소장(개방형직위)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.

2026년 8월 31일
안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

1 관련근거

-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(개방형 직위)
- 지역보건법 제15조
-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
-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
-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

2 임용직위 및 주요업무

임용 예정 직위	임용직급	임용 인원	임용 기간	직무내용
상록수 보건소장	▶ 지방과학기술서기관 ▶ 일반임기제공무원 (개방형 4호)	1명	임용일 ~ 2년	▶보건행정의 종합기획, 조정 및 건강도시에 관한 사항 ▶중기 및 연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▶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▶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▶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▶국민건강증진, 보건교육, 구강건강 및 영양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▶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관한 사항 ▶그 밖에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항 등

※ 임용권자는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
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용기간 연장 가능

3 임용신분

- 민간인은 임용계약을 통해 임용되고,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에 따라 임용기간 동안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
- 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·승진·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

4 응시 자격 요건(기준일:면접시험 시행예정일)

- 연령, 성별, 주소지 : 제한없음(남자의 경우,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에 해당되지 않고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 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

<<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 >>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
- 다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-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<<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>>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-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-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- 1. 공공기관
-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
 - 1.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: 퇴직일
 - 2.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)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- 3.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- 4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된 날 또는 사면,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
 - 5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- 6.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

<<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>>

-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 - 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 - 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 - 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 - 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 - 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- 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○ 임용분야 세부 자격요건

- 필수요건을 반드시 충족하면서, 경력요건 ① ~ ⑥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

구 분		자 격 요 건
필수요건		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
경 력 요 건	(관련학과) 학 력 기 준	【석사학위 이하 소지자】 ①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·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【박사학위 소지자】 ②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·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
	자 격 증 기 준	③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·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
	공 무 원 경 력 기 준	④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⑤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	민 간 경 력 기 준	⑥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·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
※ 유의사항

1. 자격기준일 : 최종 면접시험 예정일
2. 학력기준은 관련분야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적용
3. 관련분야 : 보건, 식품위생, 의료기술, 의무, 약무, 간호, 보건진료 등과 관련된 분야
4. 경력요건의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함.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17조제5항)
 -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첨부(근무기간,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것에 한하여 인정)
 - 시간제근무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을 인정함(주40시간 기준)

5

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○ 시험일정

응시원서 접수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(면접시험 공고)	면접시험 시행 예정일		최종합격자 발 표
		일시	장소	
9. 15.(화) ~ 9. 21.(월)	9. 29.(화) 예정	10. 1.(목) 예정	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확인	10. 12.(월) 전·후
※ 「면접시험 시행 예정일」은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기준일이며 구체적인 응시분야 시험일은 「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 시행계획」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안산시 홈페이지(www.ansan.go.kr)-채용정보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(개인별 통지 없음)				

○ 시험방법

[1차 시험] : 형식요건심사[서류전형]

- 응시자의 제출서류에 의하여 응시 자격요건 심사

※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7배수 이상으로 제한할 수 있음

[2차 시험] : 적격성심사[서류심사+면접시험]

- 1차 시험 합격자 대상. 선발시험위원회에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
요건을 검증하여 적격자 2~3인의 임용후보자를 인사위원회에 통보

능 력 요 건	하 부 요 소
전문가적 능력	i)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ii) 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수집·분석 능력 iii) 종합적 판단력 및 정책결정 능력
전략적 리더십	i) 비전제시 및 혁신지향 능력 ii) 전략적 사고 및 전략수립 능력 iii)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능력
변화관리능력	i)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 ii)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능력 iii) 고객지향성 및 새로운 사고방식의 전파 능력
조직관리능력	i) 팀워크 형성 및 목표공유 능력 ii) 업무개선능력 iii) 자원활용능력
의사전달 및 협상능력	i) 대국민 공감대 형성 능력 ii)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iii) 효과적인 협상 및 설득 능력

6

응시원서 접수

○ 원서접수 : 2026. 9. 15.(화) ~ 9. 21.(월) 09:00 ~ 18:00

※ 점심시간 및 서류정리시간 제외(11:30 ~ 13:30)

○ 접수처 : 안산시청 총무과 인재채용팀

○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※ 방문 시 대리접수 불가

- ▶ 방문접수 : 안산시청 본관 1층 북카페
- ▶ 등기우편 : (주소)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(고잔동)
안산시청 총무과 공무원 채용담당자 (우편번호 15335)
- 응시수수료 상당 금액의 우편 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 동봉(응시표는 이메일 송부)
※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마감시간에 유의(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)
- ▶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:00까지 우편소인에 한해 인정함.
- ▶ 공고내용을 빠짐없이 체크하여 서류전형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및 제출 서류 (기준일: 원서 접수일 현재)

- ①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: 해당 증명서
- ②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: 한부모가족 증명서
- ③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 :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
- ④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: 가족관계증명서

7

제출서류 <원서접수 시 스테플러, 플래그(띠지) 사용 금지>

제출서류	비고
① 응시원서 1부 [필수] ▶ 안산시 수입증지 첨부(안산시청 민원실에서 납부 후 첨부) ※ 등기우편은 우편통상환 동봉(우체국 마감시간 유의) ▶ 개방형 4호의 신규임용시험 : 1만원	[별지 제1호]
② 이력서 1부 [필수] ▶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반드시 경력증명서 첨부(미첨부 시 불인정) ▶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되므로 경력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력은 이력서 기재금지	[별지 제2호]
③ 자기소개서 1부 [필수]	[별지 제3호]
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[필수]	[별지 제4호]
⑤ 동의서 3부 [필수] ▶ 자격검증동의요구서 ▶ 개인정보제공·이용 동의 안내 ▶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또는 주민등록초본(병역포함)	[별지 제5-1호] [별지 제5-2호] [별지 제5-3호]

제출서류	비고
⑥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[필수]	[별지 제6호]
⑦ 서류전형자격요건본인의견서 1부 [필수] ▶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제출(중복표시 가능)	[별지 제7호]
⑧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각 1부 [필수] ▶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▶ 학사이상은 각 학위별 졸업증명서(또는 학위증명서) 일체 제출	6개월 이내 발급
⑨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[필수] ▶ 구체적인 담당업무, 근무기간, 근무형태(전일, 주00시간) 등이 명시되고, 발행기관 직인, 발급담당자 서명, 연락처 필수 ▶ 경력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, 기간 등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인사담당자 등의 자필 확인서 또는 업무분장표, 인사기록카드 등의 증명서류 추가로 제출하여야함 ▶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경력은 반드시 ‘주당 근무시간을 명시’ 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프리랜서,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이나 주당근무시간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 (미제출시 경력 인정 불가) ▶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▶ 폐업회사 경력의 경우, 이전에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국세청 발급 ‘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 증명서’ (또는 법인등기부등본)를 함께 제출, 기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 불가 ▶ 국민연금, 고용·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 효력 불인정 ▶ 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경력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	6개월 이내 발급
⑩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[필수] ▶ 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s.or.kr)에서 출력 가능 ▶ “보험가입 전체기간” 확인가능하도록 발급 ▶ 경력증명서 내용과 불일치 시 추가증빙서류 제출 ▶ 미해당자는 <u>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반드시 제출</u> (고용보험(www.ei.go.kr) 홈페이지에서 출력)	6개월 이내 발급
⑪ 임용 관련분야 면허증(의사) 사본 1부 [필수]	
⑫ 그 밖에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및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공인기관의 증빙서류 각 1부	해당자
※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, 연구실적 등)의 경우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 첨부	

8

보수 수준

- 경력직공무원 :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지급
- 임기제공무원 : 연봉액은 연봉한계액 130퍼센트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정하고, 기타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함

임용예정직급	적용대상	연봉상한액	연봉하한액
개방형 4호	임기제공무원	-	70,490천원

※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 등 각종 수당 별도 지급

※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에 따름

9

기타 유의사항

- 응시희망자께서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기 바랍니다.(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)
-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(학력·경력·자격 증명서)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에 의해 반환하며,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후에도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.
- 가급적 모든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제출을 권고하며, 제출된 증명서류 상 관련경력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, 안산시 내부 응시자만 있는 경우, 선발 시험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하며 응시자가 1인일 경우 연장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.
-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-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 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이 높은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(선발)할 수 있습니다.
- 방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: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.
-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,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·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합니다.
(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)
- 시험 일정은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으며,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면접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안산시청 홈페이지-채용정보란에 별도 공고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분야별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.

분 야	부 서	전화번호	비 고
채용절차	총무과	031)481-3107	
업무내용	상록수보건소 보건정책과	031)481-5905	

상록수보건소장(개방형직위) 직무수행요건 명세서

I. 기본사항

1. 기관명	2. 직위명	3. 보직 가능한 공무원의 종류	4. 보직가능 직급
안산시 상록수보건소	상록수보건소장	일반직 또는 임기제	지방과학기술서기관, 일반임기제 (개방형 4호)
5. 주요업무내용			비 중
보건행정의 종합기획, 조정 및 건강도시에 관한 사항			15
중기 및 연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			15
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			15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			15
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			10
국민건강증진, 보건교육, 구강건강 및 영양관리사업에 관한 사항			10
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관한 사항			10
그 밖에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·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항 등			10
6. 관련분야			
- 보건, 식품위생, 의료기술, 의무, 약무, 간호, 보건진료 등과 관련된 분야			
7. 필요지식 및 기술			
- 보건행정 및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법규적·실무적 지식과 경험			

II. 직무수행요건

1. 임용자격 요건	
가. 필수요건	① 학력제한 ☒ 무 ☐ 유 ② 필수 자격증 ☐ 무 ☒ 유 (※ 지방보건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의사면허를 가진 자) ③ 기타 필수요건 ☒ 무 ☐ 유
나. 경력 또는 실적요건	1) 경력요건
	(학력 기준) ○ 석사학위 이하인자 :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·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○ 박사학위 소지자 :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·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
	(자격증 기준) ○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·연구경력 2년 이상인자
	(경력 기준) ○ 공무원 -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-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○ 민간인 -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·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	2) 실적요건
	○ 해당없음

2. 능력요건

① 전문가적 능력

- i)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
- ii) 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수집·분석 능력
- iii) 종합적 판단력 및 정책결정 능력

② 전략적 리더십

- i) 비전제시 및 혁신지향 능력
- ii) 전략적 사고 및 전략수립 능력
- iii)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능력

③ 변화 관리 능력

- i)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
- ii)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능력
- iii) 고객지향성 및 새로운 사고방식의 전파 능력

④ 조직관리 능력

- i) 팀워크 형성 및 목표공유 능력
- ii) 업무개선능력
- iii) 자원활용능력

⑤ 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

- i) 대국민 공감대 형성 능력
- ii)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
- iii) 효과적인 협상 및 설득 능력

3. 특별요건

① 자격증 : ■ 무, □ 유

② 외국어 : 없음

③ 정보화능력 : ■ 무, □ 유

④ 기타 특별요건 : ■ 무, □ 유